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278호 2011. 7. 18(월)

<b>조 례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천시 조례 제960호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2</li> <li>○ 사천시 조례 제961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4</li> </ul>
<b>규 칙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천시 규칙 제496호 사천시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 ----- 8</li> </ul>
<b>고 시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천시 고시 제2011-68호 축동구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·고시 ----- 9</li> </ul>
<b>공 고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천시 공고 제2011-4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----- 22</li> </ul>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  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   ☎ 831-2215 · 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)

## 조 례

사천시 조례 제960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1년 7월 18일

사 천 시 장 정 만 규

###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” 를 “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 를 “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 로 하고,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하며, “10~17인” 을 “10명부터 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예산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한다.” 를 “간사는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.” 로 한다.

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, 지역개발국장, 기획감사담당관, 세무과장,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3)

도시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천시 지방재정 투·융자 사업 심사.

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 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범위에서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4)

## 사천시 조례 제961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1년 7월 18일

## 사 천 시 장 정 만 규

###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환경기본조례” 를 “사천시 환경기본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,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” 를 “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” 로 한다.

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 을 각각 “이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연의 상태를 말한다.” 를 “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” 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” 를 “악취,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” 로, 같은 조 제4호 중 “활동에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 등으로써” 를 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,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5)

일조방해 등으로서” 로, 같은 조 제5호 중 “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” 를 “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의2호, 제6호,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4의2. “환경훼손” 이란 야생 동·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, 생태계 질서의 교란, 자연경관의 훼손,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
6. “지속가능한 발전” 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

7. “푸른사천21” 이란 시민·사업자·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·사업자·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.

제4조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제2장 제명 “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” 을 “환경보전계획 및 시책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환경기본계획” 을 “환경보전계획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환경기본시책” 을 “환경보전시책” 으로 한다.

**제9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**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명 “환경영향 검토” 를 “환경영향검토” 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5조(환경정책위원회)** ① 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환경정책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6)

위원으로 구성 하고 부시장, 환경정책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3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
⑤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 중 “범위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사천시” 를 “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인” 을 “30명” 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” 을 “지방의제 21 관련 국장 및 과장” 으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한다.” 를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 로 하며,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

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효율적인 추진” 을 “실천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천에 대한 계획 과 평가” 를 “추진을 위한 교육·홍보” 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” 를 “회장이 협의회 동의의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범위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” 를 “「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」” 로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7)

제27조 중 “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” 를 “범위  
에서 「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8조(운영규칙) 중 “실천협의회” 를 “협의회” 로 한다

제4조제7호, 제9조제2항제6호, 제15조제4항제2호, 제24조제4호, 제26조제1항제3호  
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8)

## 규 칙

### 사천시 규칙 제496호

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1년 7월 18일

사 천 시 장 정 만 규

### 사천시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

사천시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9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1-68호

### 축동구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·고시

축동구호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제23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,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·고시합니다.

2011년 7월 8일

사 천 시 장

#### I.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

##### 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명 칭 : 축동구호농공단지
-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
- 면 적 : 106,207m<sup>2</sup>

##### 2.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(변경없음)

-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내 유희 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0)

### 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- 법인의 명칭 : 대한토지신탁(주)
- 대표자의 성명 : 주 기 용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-31 섬유센터7층

### 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
- 개발기간 : (기정) 2008. 9. ~ 2011. 4. ⇒(변경) 2008. 9. ~ 2012. 4.
- ※ 변경사유 : 농공단지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

- 개발방법 : 민간개발

### 5.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 계획(변경없음)

- 주요유치업종 : 금속가공제품(25), 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(26), 기타기계 및 장비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30), 가구(32), 기타 제품(33)
- 유치업종배치 계획
  -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
  - 규모의 변동이나 대체 등이 예상되므로 상호보완성 및 융통성 부여

### 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
-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면적(㎡)	비율(%)	비 고
계	106,207	100.0	
▷ 산업시설 용지	77,193	72.7	7개 블록
▷ 지원시설 용지	3,230	3.0	
▷ 공공시설 용지	25,784	24.3	
▷ 도 로	9,669	9.1	2개노선(649m)
▷ 배수지	2,647	2.5	
▷ 오·폐수처리장	2,980	2.8	
▷ 완충녹지	10,488	9.9	2개소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1)

○ 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
## ① 도로계획

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중로	2	39	15.0	국지도로	460	268-3도	225-25임	일반도로			내부 진입도로
중로	3	18	12.0	국지도로	189	261-2전	225-22임	일반도로			내부 진입도로

## ② 녹지계획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68-5 일원	3,868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25-1 일원	6,620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# ③ 수도공급설비계획

시설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축동면 구호리 225-2	2,647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# ④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장	축동면 구호리 225-13	2,980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2)

7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: 해당없음
8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토지대장 소유자	
						주 소	성 명
1	구호리	191	전	1,571	1,57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	구호리	191-1	전	313	31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	구호리	192	전	1,183	1,18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	구호리	193	전	283	28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	구호리	193-1	전	550	55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 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	구호리	194	임	1,180	1,18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	구호리	195	임	683	68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	구호리	195-1	임	338	33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9	구호리	195-2	임	685	68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0	구호리	196	전	96	9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1	구호리	196-1	전	945	94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2	구호리	197	전	663	66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3	구호리	197-1	전	238	23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4	구호리	197-2	전	1	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5	구호리	197-3	전	15	1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6	구호리	197-4	전	239	23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7	구호리	197-5	전	213	21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8	구호리	198	전	1,471	1,47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19	구호리	198-1	전	477	47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0	구호리	198-2	전	2	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1	구호리	199	답	8	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2	구호리	199-1	답	28	2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3	구호리	199-2	답	456	45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3)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토지대장 소유자	
						주 소	성 명
24	구호리	199-3	답	669	66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5	구호리	199-4	답	608	60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6	구호리	200	전	5	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7	구호리	200-1	전	352	35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8	구호리	201	답	63	6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29	구호리	202	답	2,721	2,72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0	구호리	225-1	임	5,558	5,55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1	구호리	225-2	임	2,647	2,64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2	구호리	225-7	임	49	4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3	구호리	225-8	임	11,456	11,45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4	구호리	225-9	임	3,392	3,39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5	구호리	225-10	임	3,675	3,67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6	구호리	225-11	임	7,034	7,034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7	구호리	225-12	임	901	90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8	구호리	225-13	임	3,525	3,52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39	구호리	225-14	임	410	41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0	구호리	225-15	임	159	15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1	구호리	225-16	임	12	1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2	구호리	225-17	임	100	10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3	구호리	225-18	임	3,227	3,22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4	구호리	225-19	임	33	3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5	구호리	225-20	임	48	4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6	구호리	225-21	임	558	55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7	구호리	225-22	임	1,013	1,01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8	구호리	225-23	임	25,784	25,784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49	구호리	225-24	임	601	60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0	구호리	225-25	임	81	8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4)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토지대장 소유자	
						주 소	성 명
51	구호리	259-1	전	20	2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2	구호리	259-2	유	73	7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3	구호리	260	전	122	12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4	구호리	261	전	70	7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5	구호리	261-1	전	65	6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6	구호리	261-2	전	89	8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7	구호리	261-3	전	80	8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8	구호리	262	전	43	4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59	구호리	262-1	전	51	5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0	구호리	262-2	전	1	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1	구호리	262-3	전	153	15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2	구호리	262-4	전	930	93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3	구호리	262-5	전	111	11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4	구호리	263-1	답	156	15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5	구호리	263-2	유	280	28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6	구호리	263-3	답	1,958	1,95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7	구호리	263-4	답	1,213	1,21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8	구호리	263-5	유	1	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69	구호리	263-6	답	976	97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0	구호리	263-7	답	97	9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1	구호리	264	전	50	5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2	구호리	265-1	답	129	12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3	구호리	265-2	유	276	27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4	구호리	265-6	답	155	15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5	구호리	265-7	유	459	459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6	구호리	265-8	유	1,041	1,041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7	구호리	265-9	유	1,107	1,10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5)

번호	리명	지번	지목	대장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토지대장 소유자	
						주 소	성 명
78	구호리	266	전	17	17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79	구호리	266-1	전	3	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0	구호리	267-1	전	188	73	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414	김동석
81	구호리	267-2	도	2	2		국(건설부)
82	구호리	268-1	전	116	116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3	구호리	268-3	도	33	33		국(건설부)
84	구호리	268-4	전	223	22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5	구호리	268-5	전	320	320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6	구호리	268-6	전	12	12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7	구호리	913	구	436	436		국(농림부)
88	구호리	산17-4	임	2,083	2,083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89	구호리	산18	임	298	298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90	구호리	산20-1	구	60	60		국(건설부)
91	구호리	산21-1	구	1,455	1,051		국(건설부)
92	구호리	산21-2	임	5,455	5,455	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-31	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
	합계			106,726	106,207		

## 9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사천시청 공단조성과(☎831-347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6)

## II. 실시계획변경승인 사항

### 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

- 축동구호농공단지

### 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

- 법인의 명칭 : 대한토지신탁(주)
- 대표자의 성명 : 주 기 용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-31 섬유센터7층

###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(변경없음)

-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내 유희 인력취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# 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
- 면 적 : 106,207㎡

### 5. 사업시행기간(변경)

- 시행기간 : (기정) 2008. 9. ~ 2011. 4. ⇒ (변경) 2008. 9. ~ 2012. 4.
- ※ 변경사유 : 농공단지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

### 6.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25조제5항 각호 사항(변경없음)

#### 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

가. 용도지구 결정조서

1)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

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(㎡)	비고
축동구호개발진흥지구	산업개발 진흥지구	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	지구단위 계획에 따름	99,998	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7)

나.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축동구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	축동구호 농공단지	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	99,998	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1) 도로

가) 도로 총괄표

유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	노선수	연장	면적(m <sup>2</sup> )
합계	2	649	9,669	-	-	-	1	460	7,036	1	189	2,633
광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로	-	-	-	-	-	-	-	-	-	-	-	-
중로	2	649	9,669	-	-	-	1	460	7,036	1	189	2,633
소로	-	-	-	-	-	-	-	-	-	-	-	-

나) 도로결정조서

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중로	2	39	15.0	국지도로	460	268-3도	225-25입	일반도로			내부 진입도로
중로	3	18	12.0	국지도로	189	261-2전	225-22입	일반도로			내부 진입도로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8)

## 2) 녹지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68-5 일원	3,868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25-1 일원	6,620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# 3) 수도공급설비

시설명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축동면 구호리 225-2	2,647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# 4) 수질오염방지시설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최초 결정일	비 고
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 처리장	축동면 구호리 225-13	2,980		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19)

## 2.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 적(m <sup>2</sup> 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③	A	70,984	공장용지	70,984	
			A-1	4,091	공장용지
			A-2	11,921	공장용지
			A-3	9,947	공장용지
			A-4	11,328	공장용지
			A-5	3,029	공장용지
			A-6	4,210	공장용지
	B	3,230	지원시설	3,230	
			B-1	2,245	공동이용시설
			B-2	985	공동이용시설
	C	16,115	공공시설	16,115	
			C-1	2,647	배 수 지
			C-2	3,868	완충녹지
			C-3	2,980	폐수종말처리장
	D	9,669	도 로	9,669	
			D-1	9,669	도 로
	계	99,998	총 계	99,998	

나.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④	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	용 도	공장 및 부대시설
		건폐율	70 %
		용적률	150 %
		높 이	5층 이하(20m 이하)
		배 치	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배치(도면참조)
		형 태	
		색 채	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(권장)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0)

##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
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완충녹지, 수도공급설비, 수질오염방지시설)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축동구호 농공단지 조성사업

### 2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가. 도시계획도로

결정 규모					시행 구간			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폭원(m)	연장(m)	기점	종점	
중로	2	39	15.0	460	15.0	460	축동면 구호리 268-3	축동면 구호리 225-25	
중로	3	18	12.0	189	12.0	189	축동면 구호리 261-2	축동면 구호리 225-22	

나. 녹지

결정 규모				시행 면적		비고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68-5일원	3,868	축동면 구호리 268-5일원	3,868	
녹지	완충녹지	축동면 구호리 225-1일원	6,620	축동면 구호리 225-1일원	6,620	

다. 수도공급설비

결정 규모				시행 면적		비고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
수도공급 설비	배수시설	축동면 구호리 225-2일원	2,647	축동면 구호리 225-2일원	2,647	

라. 수질오염방지시설

결정 규모				시행 면적		비고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
수질오염 방지시설	폐수종말처리장	축동면 구호리 225-13일원	2,980	축동면 구호리 225-13일원	2,980	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1)

### 3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

가.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-31 섬유센터 7층

나. 성명 : 대한토지신탁(주) 주기용

### 4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가. 2008. 9~2012. 4.(기정:2008. 9. ~ 2011. 4.)

나. 변경사유 : 재해위험에 대한 민원과 사업시행 중 발생한 보완·조치 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(완충녹지 사면보강, 배수시설 정비 등)

### 5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첨부(변경없음)

### 6. 자금조달계획(변경없음)

가. 자금조달계획

구 분	총사업비	년차별 투자계획(백만원)				비 고
	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
합 계	10,669	3,000	2,600	4,060	1,009	
당사보유금	800	800				
은행대출	9,869	2,200	2,600	4,060	1,009	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2)

## 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1-415호

###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

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7월 일

사 천 시 장

#### 1.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

: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『불법산지전용에 관한 임시특례』를 적용한 지목변경을 위한 해제

#### 2.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

임야소재지				종류	지적 (㎡)	지정 면적	지정해제 예정지 면적	잔여 면적	지정일자	비고
시	면	리	지번							
사천	정동	풍정	산55-14	수원함양 보호구역	62,187	62,187	20,080	42,107	2008.12.29	

#### 3. 산림소유자 :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515-3 정동원

4. **이의신청** :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내에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(주소 :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시청로 77, 전화 055-831-342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이의신청서(서식) 1부. 끝.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3)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산림보호구역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제 이의신청서		처리기간 20일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 : )
고시된 보호구역예정지		
산 립 면 적		m <sup>2</sup>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      예정고시일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제		. . . (제 호)
이 의 신 청 면 적		m <sup>2</sup>
이 의 신 청 사 유		
「산림보호법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     (서명 또는 인)                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                    산 립 청 장                      시·도 지 사      귀하                      지방산림청장                 </div>		
※ 구비서류 : 신청 이유서 1부	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# 사 천 시 공 보

제278호(24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